



제3025호 2025. 11. 14.(금)

www.jeonbuk.go.kr.

조 례

○ 조례 제5910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조례 제5911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3
○ 조례 제5912호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6
○ 조례 제5913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조례 제5914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10
○ 조례 제5915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조례 제5916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3
○ 조례 제5917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례 제5918호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9
○ 조례 제5919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조례 제5920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30
○ 조례 제5921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조례	35
○ 조례 제5922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40
○ 조례 제5923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45
○ 조례 제5924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49
○ 조례 제5925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6
○ 조례 제5926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107
○ 조례 제5927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110
○ 조례 제592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113
○ 조례 제5929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125
○ 조례 제5930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128
○ 조례 제5931호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 조례 제5932호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32
○ 조례 제5933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6
○ 조례 제5934호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	139
○ 조례 제5935호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146
○ 조례 제5936호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148
○ 조례 제5937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151
○ 조례 제5938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55
○ 조례 제593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157
○ 조례 제594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159
○ 조례 제5941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161

규 칙

- 규칙 제3297호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174

고 시

- 고시 제2025-35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191
- 고시 제2025-357호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고시 193

공 고

- 공고 제2025-1749호 도로 사용개시 및 폐지의 공고 194
- 공고 제2025-1763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사단법인 희망찬코리아) 196
- 공고 제2025-1764호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공고(사단법인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197

시 군

- 군산시 고시 제2025-20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98
- 익산시 고시 제2025-206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0
- 익산시 고시 제2025-207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
(익산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204
- 익산시 고시 제2025-211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류1호,소로1류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07
- 정읍시 공고 제2025-1840호 정읍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209
- 남원시 고시 제2025-218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10
- 완주군 고시 제2025-153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12
- 완주군 고시 제2024-154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213
- 완주군 고시 제2025-155호 완주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15
- 고창군 고시 제2025-191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216

기 타

-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218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5-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219
-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5-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220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0호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성 기반 폭력”을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7.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

제8조제2호 중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을 “치료, 긴급보호 등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기관·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

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5.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

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
2.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1호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권 및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제1항제2호·제2항제1호 및 제108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2.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
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 보행로를 설치한 경우
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등)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를 말한다)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등)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

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

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

4. 그 밖에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 등의 장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2호

전북특별자치도 전기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전기재해 예방조치”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각종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전기적 화재 및 감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전기재해 예방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방조치 대상 시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제3종시설물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예방계획)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
북자치도 전기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북자치도 내 전기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
2. 전기재해 예방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전기재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①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과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 사업
2. 노후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 지원 사업
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대 도민 홍보사업
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개발
5.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 등 전기재해 예방 안전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제1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
다.

② 도지사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

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3호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의치보철”을 “보철 지원(틀니 및 임플란트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4호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와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함양을 돕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방안

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

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3. 청소년 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4.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등 활동 지원

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교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5호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를 “전북특별자치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6호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과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및 제17조에 따른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이나 소방교육·훈련 중 사망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2. “공상소방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공무상 부상 및 질병 등으로 공무원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받은 전북자치도 소속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3. “공사상 소방공무원”이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및 공상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3년마다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지원,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2.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
4.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
6.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원의 부담 및 확보)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원을 매년 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2.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장학금 등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본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소방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병원장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소방업무 관련 전문성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에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 한 경우
3. 그 밖에 자문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은 제6항 또는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의결에

서 회피하여야 한다.

-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자녀장학금 지원)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선발방법, 지원규모, 신청 및 지원절차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단체보험 지원) ① 도지사는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장 지원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취업·창업 지원 등) 도지사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업상담, 채용알선, 일자리 정보제공, 직무능력향상 및 취업교육훈련 등
2.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3. 그 밖에 전북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리상담지원 등) ①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공상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조속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지원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추모사업 지원) 도지사는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한 애도와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한 위원회 및 위원은 제8조에 따라 설치 및 구성한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7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 같다”를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의 제목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을 “(환경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북특별자치도환경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을 “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계획(이라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적·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 다)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를 “법에 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기본계획”을 각각 “환경계획”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8호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 대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

제5조의 제목“(입장료)”를“(입장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입장료”를 “입장료 및 주차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목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제작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19호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을 “(조합의 정관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각 사업 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합의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중 “도시개발사업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를 “도시개발사업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를 “이율 및 연체이자 「전북특별자치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와 연체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지방회계법」 제39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시개발사업”을 “도시사는 영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공사채등록법」 제3조”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영 제84조”를 “영 제8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권한의 위임사항(조례 제10조관련)

위 임 사 항	근 거 법 령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고시 및 개발계획의 변경고시, 도시개발구역의 해제고시, 도시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에 관한 권한 중 다음의 각목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중 면적 10만 제곱미터미만 위임 나.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중 면적 5만제곱미터 미만 위임 2.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 실시계획인가의 고시 및 실시계획의 협의 권한 중 면적 30만제곱미터미만 위임 3. 규약 및 시행규정 작성에 관한 권한 4. 신탁계약의 승인 5.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6. 선수금 승인 7.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승인 8.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참여요청에 관한 권한 9.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증명서의 교부, 보완시공 등의 조치에 관한 권한 10.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에 따른 협의 11.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12. 도시개발구역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권한. 다만, 당해 시설 또는 그 영향권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13.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협의 및 통보 14.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5. 보고 및 자료의 제출요구, 업무 및 회계의 검사에 관한 사항 16.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7. 청문실시에 관한 사항	법 제3조제1항, 법 제4조제1항, 법 제9조제1항, 법 제10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18조 및 제24조 법 제17조제2항 및 제4항, 법 제18조제1항, 법 제19조제3항 영 제21조, 제22조 법 제12조제4항 법 제13조 법 제25조제2항 법 제26조 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51조 법 제52조제3항 법 제53조 법 제58조 법 제66조제3항 및 제6항 법 제68조제2항 법 제74조 법 제75조 법 제76조

[별표 3]

정관 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조례 제8조관련)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도시개발사업의 명칭은 관할 행정구역명을 중심으로 시행자 및 해당 구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구역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며, 그 표기는 ○○구역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2. 조합의 명칭

조합의 명칭은 ○○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3. 사업목적

조합은 법, 영, 시행규칙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업의 범위 및 사업기간

가. 사업의 범위는 법 제3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대상지역 및 규모가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기간은 다음 사항과 같다.

-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 공고일까지로 한다.
- 2) 환지방식은 실시계획인가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 3) 혼용방식은 개발구역 지정일부터 해당 사업의 환지처분일까지로 한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구역 안에 두거나 해당 시·군의 관할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임원의 자격·수·임기·직무 및 선임방법

가. 임원의 자격은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다만, 창립총회 등 최초로 선임된 임원은 선임된 다음 날부터 그 효력

이 발생한다.

나. 임원의 수는 다음 사항과 같다.

- 1) 조합장: 1인
- 2) 이사: 3인 이상 5인 이하 (조합원 100명 이상인 경우 5인 이상 10인 이하)
- 3) 감사: 2인 이상 3인 이하

다.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조합장 제외)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적합한 후보자 중 차기 총회에서 이를 보궐 선임하고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조합장의 경우와 궐위된 임원이 3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라. 임원의 선임방법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마. 후임 임원은 전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8. 회의에 관한 사항

가. 회의는 총회와 대의원회(영 제36조에 따라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나.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조합장 및 출석한 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9. 총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가.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라. 임시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개최하거나 대의원 3분의 2이상 또는 조합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마. 라목에 따라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감사가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요구한자가 개최한다.

바.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마목에 따라 조합장이 아닌 공동명의로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나목부터 마목까지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이전에 목적·안전·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조합원에 게는 그 사실을 7일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알려야 한다.

아. 총회는 사목에 따라 통지한 안전에 한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자. 총회의 의결사항은 영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카. 총회는 법, 영 및 정관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타.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의사표시가 표시된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0. 대의원회의 구성, 기능,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

가. 영 제36조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나. 대의원회의 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다.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은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회의 개최방법 및 의결권의 행사방법 등은 제9호를 따른다.

11.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체비지 매각 수익금, 청산금,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12.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회계는 매년 1월 1일 또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예산 및 회계는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른다. 다만,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계에 관한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 2)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3) 수입의 관리·징수방법 및 수납기관 등에 관한 사항
- 4) 지출의 관리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
- 5) 계약 및 채무관리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회계문서와 장부에 관한 사항

다. 공사 및 감리의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11조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시행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능력을 갖춘 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다.

라.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은 규약·정관·시행규정 등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산회계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다.

마.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 30일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는 결산보고서를 총회 또는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공시설용지의 부담에 관한 사항

체비지 및 기반시설 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형상, 토지의 가격 및 기반시설의 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전·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4. 공고의 방법

환지계획 및 환지에지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람하는 경우에는 공람의 장소 및 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5.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조합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나. 위원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 1) 당해 사업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 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
- 3)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 4) 세정 및 회계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다. 가목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 2) 청산금 및 수익자 부담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 3) 불환지 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
- 4)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16. 토지 등 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조성 토지 등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여야 한다.

17.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가.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원칙으로 한다.

나. 환지계획은 종전의 토지와 환지의 위치·지목·면적·토질·수리·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 환지예정지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환지예정지는 협의회 심의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2) 환지예정지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의 임차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공람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60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와 도면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8.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19. 청산에 관한 사항

가.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이면적에 법 제40조에 따라 결정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나.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0.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사업구역 안에 기반시설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은 인가 및 허가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변동 등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사항

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조합원에게 있다.

22. 조합의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조합은 운영비용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의 규모,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세칙으로 정한다.

23.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및 게시할 내용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은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야 한다.

나. 홈페이지에 게시할 내용은 다음 사항과 같다.

- 1)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2)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조합설립의 인가에 관한 사항
- 4)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 5)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
- 6) 공사추진 및 환지처분에 관한 사항
- 7) 총회 및 대의원회 의결에 관한 사항
- 8) 회계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9) 기타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24. 조합의 운영 및 해산 등

가. 조합의 운영 및 해산에 관하여 법, 영, 조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을 따른다.

나. 정관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관계행정기관의 지침 또는 지시 등을 따른다. 다만,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개정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5. 운영세칙

조합은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정관의 범위 안에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26. 정관의 시행일

정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0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대상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65세 이상으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각종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지역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3.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

제5조(통합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에 따른 사업
2. 다제약물관리 등 약물관리 사업
3.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른다.

제6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도지사는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여성보건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 통합지원에 관한 보건, 복지, 의료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3.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체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등)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역계획의 수립, 협의체의 구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1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측정·평가 및 보상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도민의 경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다.
2. “사회성과”란 사회적경제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로써 교육,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을 통하여 절감된 사회적 비용이나 증가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3. “사회성과 측정”이란 사회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원칙·기준을 적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상사업”이란 사회성과 측정·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기업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대상기업”이란 보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과 사회성과 창출에 따른 보상사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추진체계 및 세부 추진 계획
3. 대상기업의 선정기준, 범위, 방법, 지원금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의 측정원칙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기반구축 및 교육·홍보 등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의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기준, 방법에 관한 사항
4. 사회성과 측정에 필요한 정보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제10조에 따른 자문·검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금액, 지급 기준, 범위, 방법 등 및 제13조에 따른 포상의 대상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위원회로 본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회성과 측정의 원칙·기준) ① 도지사는 대상기업 선정에 위한 사회성과 측정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대상기업은 사회성과 측정이 가능하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
 2. 사회성과의 측정은 객관적·전문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의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사회성과의 측정 및 평가 방법은 대상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 할 것
 4. 대상기업에 사회성과 측정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 ② 도지사는 위원회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심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회성과 측정에 필요한 기준, 범위, 방법 등을 정한다.
- ③ 도지사는 전년도 사회성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사회성과 측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대상기업의 선정에 위한 사회성과 측정의 원칙·기준의 수립
 2. 사회성과 측정·평가 및 결과보고서 작성
-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성과 측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성과 측정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③ 수탁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사회성과 측정 사업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자문·검증)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 및 보상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하 “전문가등”이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에게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게 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하거나 검증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등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측정의 객관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업에 법인, 근로자, 사업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전북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항목, 수집방법, 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우수한 대상기업에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사회성과 측정을 통해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우수한 대상기업에 경영지원, 판로촉진 등 그 밖의 지원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사회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대상기업에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환수조치 등)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재정지원 또는 제13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재정지원금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고, 포상을 수여한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재정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재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제15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2호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단계의 기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방안
3.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 및 실태에 대한 정보·자료·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
4. 마을기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마을기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
6. 예비마을기업자 발굴 및 육성 방안
7.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8.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
9.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군 마을기업과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 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예비마을기업의 취소)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예비마을기업이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마을기업의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마을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지역·부문·분야 단위 마을기업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마을기업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마을기업의 창업 및 경영·세무·회계 등의 컨설팅 지원사업
2.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사업
3. 마을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박람회 개최·참가 및 마케팅·판로 지원사업
4.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마을기업 지원기관)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제11조에 따른 지원기관 업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마을기업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3호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전북자치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

3. “전출금”이란 전북자치도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
4. “위탁사업비 등”이란 전북자치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
5. “정산”이란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출연금 등의 조정”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등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에 적용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출연금 등을 하나의 법인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공사·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 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이하 “정산검사 결과”라 한다)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

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등의 예산을 조정·편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매뉴얼) 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이하 “정산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산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에 출연금 등의 예산을 절감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4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

고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자료”란 제1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도지사가 문화유산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도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도지사가 등록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4. “도자연유산”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5. “자연유산자료”란 제4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도지사가 자연유산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자연유산을 말한다.
-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법, 자연유산법에 따른다.

제2장 문화유산

제1절 문화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3조(문화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

4. 문화유산법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문화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유산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제5조(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

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문화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제1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문화유산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지정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⑥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 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은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⑨ 제7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6조(문화유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 풍수해,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대응매뉴얼은 연 1회 이상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등 대응매뉴얼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 및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의 화재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난방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 도난방지장치, 제7조에 따른 금연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문화유산 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등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흡연구역의 시설기준과 설치방법 등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장애인이 문화유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표시, 안내보조 등의 보조서비스 제공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는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장애인 편

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장애인 편의시설이 문화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및 보존·관리 및 활용

제9조(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에 대하여 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유산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때에는 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절차)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을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하려면 제3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 및 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해당 문화유산이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유산으로 지정 승인한 결과를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

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제11조(문화유산자료)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절차는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도지정 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할 때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의 지정 절차는 도지정문화유산의 지정절차를 준용한다.

③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5조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13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문화환경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② 도지사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 2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도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4항에 따라 조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그 조정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3항에 따른 예고 및 제4항에 따른 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할 때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지정서의 교부) 도지사는 제9조, 제11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 제9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과 보호구역등의 지정은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7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가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지정의 해제 절차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② 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 문화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보호물과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해제의 효력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제통지를 받으면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산이 지정 전에 원형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도문화유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그 문화유산을 중요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문화유산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통지와 임시지정서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하되, 이 경우에는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3절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보존·관리 및 활용

제19조(소유자 관리의 원칙) ①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해당 문화유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보호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시·군이나 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그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나 지정하려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를 지정하면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도보에 고시하고,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관리단체가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해당 관리단체의 부담으로 하되,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부담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1조(허가사항)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면적 및 소재지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를 탁본 또는 영인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

제22조(허가기준)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문화유산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들어맞을 것

제23조(허가사항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받은

때

- ② 제2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출 등의 금지) ①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는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다만,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국외 전시, 조사·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국외 반출을 허가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5개월 전에 규칙으로 정하는 반출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반출목적 달성이나 문화유산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⑤ 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신고사항)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문화유산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地目),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문화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21조제1호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명령)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관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상황이 그 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또는 장애물의 제거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4. 제21조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

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도지사의 부담으로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4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기록의 작성·보존) ① 도지사와 해당 시장·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 및 변경 사항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나 연구기관에 도지정문화유산의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대하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에 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문화유산의 소재 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문화유산의 현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 뜨기 전이나 해 진 뒤에는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와 재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재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3. 문화유산의 수리 및 복구
4.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행위의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5.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직권에 의한 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 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통지, 조사의 협조요구 및 조사상 필요한 행위의 범위, 조사 증표 휴대 및 제시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손실의 보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사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제31조(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한 허가사항 등의 준용) 임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와

보호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7호까지에 한한다) 및 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절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제32조(설치)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1조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를 둔다.

② 도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중요한 수리와 복구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
8.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매수·취득에 관한 사항
9.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0. 문화유산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도내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 요청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유산의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

을 포함한다) 지정 또는 해제 및 근현대문화유산법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또는 말소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3조(구성) ① 도문화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도문화유산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조사·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안건
2. 위원이 속한 단체의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3. 위원이 용역 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안건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3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 쇠약, 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도문화
유산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품위
손상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7조(분과위원회) ①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을 종류별로 구
분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회
의를 총괄한다.

-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조사·심의한 사항은 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조사·심의한 것으
로 본다.

제38조(전문위원) ① 도문화유산위원회에 4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그 임
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전문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
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전문위원은 도지사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와 계획의 입안을 하고 해당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9조(회의) ① 위원장은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도문화유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문화유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출석 위원

3. 심의 내용과 의결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간사 등) ①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문화유산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유산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도문화유산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42조(수당 등)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관계자의 의견 청취) 도문화유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절 공개 및 관람료

제44조(도지정유산의 공개 등)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해당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 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5조(관람료 징수 및 감면)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 또는 시·군이 관리하는 도지정문화유산, 도등록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의 경우 시·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 또는 시·군이 아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도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도등록문화유산

제46조(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① 도지사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 그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기준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③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절차는 제10조의 도지정문화유산 지정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나 관리자가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수 없으면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및 수리와 관련된 기술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48조(필수보존요소의 지정·고시)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이하 “필수보존요소”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수보존요소를 지정할 때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필수보존요소가 훼손, 가치의 상실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보존요소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49조(도등록문화유산의 신고 사항)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4. 소재지의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5.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6.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7. 제50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8. 반출이 허가된 도등록문화유산을 반입한 경우
9. 도등록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는 경우

제50조(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유산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 가.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 나.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이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 1) 교량·등대 등 구조물인 경우에는 그 외관 면적
 - 2) 터널·동굴 등 그 외관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내부의 표면적
 -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46조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2.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보존 처리하는 행위

4. 해당 도등록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5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2. 제86조 및 제87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3. 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그 사실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행정명령)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 상황이 그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

2. 도등록문화유산 보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조치

3. 제50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4. 문화유산법 제2조제8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건설공사 시행자에 대한 공사중단 및 훼손·멸실·수몰 예방조치

②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 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한 경우 해당 사실을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긴급조사)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사실의 통지,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3조(가치재평가) ① 도지사는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에 따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이하 이 조에서 “재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의 말소, 필수보존요소 지정의 변경 및 해제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4조(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비용 지원 등)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2.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

3. 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기록 작성

4. 그 밖에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을 수리하거나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다.

④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유산 관리단체는 도지사에게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 및 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도등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16조로 정한다.

제55조(도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특례) 도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6조(등록의 말소) ① 도지사는 도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을 말소하려면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가 제출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말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말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⑤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등록 말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7조(준용 규정) ①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등록말소의 고시 및 통지, 등록증의 교부, 등록·등록 말소의 효력 발생 시기, 임시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는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등록증”으로, “임시지정”은 “임시등록”으로, “임시지정서”는 “임시등록증”으로, “해제”는 “말소”로 본다.

② 도등록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의 원칙,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허가사항의 취소, 수출 등의 금지, 기록의 작성·보존, 정기조사, 손실의 보상, 관람료 징수 및 감면, 보조금,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45조, 제86조, 제8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 “도지정문화유산”은 “도등록문화유산”으로, “관리단체”는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본다.

제4장 자연유산

제1절 자연유산 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58조(자연유산 보호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자연유산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연유산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매년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조(자연유산의 조사) ① 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연유산의 현황, 관리 및 활용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대상이 천연기념물등이 아닌 자연유산인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절차 및 조사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0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종(種)으로 지정된 천연기념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이하 이 조에서 “약식영향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천연기념물등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천연기념물등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등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천연기념물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제3항제1호나목 및 제3항제2호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는 200미터 초과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자연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천연기념물등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4.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5. 토지·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6. 그 밖에 천연기념물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행위
-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다만, 그 행위기준의 범위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라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한다.
- ⑦ 제2항에 따른 검토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2절 도자연유산 지정

- 제61조(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 ①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자연유산 중 자연유산법 제11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자연유산법 제12조에 따른 명승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자연유산 중 향토자연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는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유산의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동물·식물을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의 서식지·번식지·도래지로서 중요한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이 개발 등에 노출되는 등 동물·식물이 훼손될 위험이 있으면 종과 그 지역을 함께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도자연유산이나 자연유산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자연유산” 앞에 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2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3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제60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제63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라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제62조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4조에서 같다)를 지정하면 그 취지를 각각 도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6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은 도보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4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도자연유산이 그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이하 “도자연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 해제에 관한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지정 해제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제65조(임시지정) ① 도지사는 제61조에 따라 도자연유산으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연유산이 지정 전에 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이를 도자연유산으로 임시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은 임시지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61조에 따른 지정이 없으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지정의 효력은 임시지정된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통지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임시지정 통지에 대해서는 제63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도보 고시는 하지 아니한다.

제3절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제66조(허가) ① 도자연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도자연유산(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도자연유산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나. 도자연유산을 포획, 채취(혈액, 장기, 피부 등의 채취를 포함하며 치료목적인 행위는 제외한다), 사육, 도살, 인공증식·복제, 위치추적기 부착, 자연으로의 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본, 박제, 매장, 소각하는 행위

다. 도자연유산 내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토지·수면의 매립 등 행위

라. 도자연유산 내에서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2.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3.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탁본, 촬영 등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행위

4.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행위로서 제60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는 행위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5. 그 밖에 도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자연유산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도자연유산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한 사항 중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제67조(허가기준) ① 도지사는 제66조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
3. 자연유산 보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국가유산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허가 취소) ① 도지사는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69조제2항, 제72조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도지사는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6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착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그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9조(도자연유산 수출 등의 금지) ① 도자연유산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도자연유산을 반출할 수 있다.

1.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도자연유산을 국외에서 전시하는 경우
2.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도자연유산을 반출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일 5개월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반출목적 달성이나 도자연유산의 안전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국외 반출을 허가받은 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의 현황 및 보존·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다.

1. 제6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도자연유산을 표본·박제 등으로 제작한 경우

2. 특정한 시설에서 연구 또는 관람 목적으로 증식된 도자연유산의 경우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도자연유산의 반출·수출 허가 및 연장허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신고) ①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은 해당 도자연유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2.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이 변경되었거나 소유자등의 성명이나 주소가 변경된 경

우

3. 도자연유산의 소재지 지명, 지번, 지목, 면적 등이 변경된 경우
 4.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5. 도자연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6. 제66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허가받아 이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제66조제1항제2호 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 도자연유산을 반출한 후 이를 다시 반입한 경우
 8. 동물·식물의 종이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정일 이전에 표본이나 박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폐사한 도자연유산인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
 10.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에 대하여 치료, 질병 등 위협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② 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亞種)]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해당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에서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허가받은 사항을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그 행위를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1조(행정명령)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도자연유산의 관리 상황이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등에 대한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의 수리·복원,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장애물의 제거
3.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 대한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긴급한 조치로서 정하는 행위
4. 도자연유산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동물·식물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제6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행위의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②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등에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를 하게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직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제5호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도자연유산의 공개) ① 도자연유산은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자연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해당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위치,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범위 등을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개 제한의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제한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 관할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도자연유산에 학술연구·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하여 출입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3조(관리자의 선임 등) ①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도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그에 대리하여 해당 도자연유산을 보존·관리할 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74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도자연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도자연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

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시·군,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도 또는 시·군이 된다.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도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6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75조(관리단체의 관리) ① 도지사는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에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관리행위”라 한다)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74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의 다음 각 호의 관리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도자연유산 및 그 보호물의 유지·관리 및 일상 점검
2. 해당 도자연유산의 주변 환경의 보호
3. 해당 도자연유산의 공개·전시·홍보 등 활용 시 도자연유산의 훼손·멸실 등 방지
4. 해당 도자연유산의 관람·체험 등에 참여하는 사람의 안전 관리
5. 그 밖에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자연유산의 관리행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관리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관리

단체가 부담능력이 없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6조(정기조사)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해당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도자연유산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해당 도자연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조사 시기, 기간,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소유자등에게 도자연유산의 공개, 현황자료의 제출, 소재장소 출입 등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도자연유산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측량, 발굴, 장애물의 제거, 표본채취,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위임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조사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자연유산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직권조사) ① 도지사는 도자연유산이 발견되거나 도자연유산의 멸실·훼손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에게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 현황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8조(조사 결과의 활용) 도지사는 제7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와 제77조제1항에 따른 직권조사의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도자연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도자연유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지정 및 해제
2. 도자연유산의 수리, 복구 및 복원 등의 보존조치
3. 도자연유산의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금지 또는 시설의 설치·제거 및 이전
4. 제62조제2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5. 그 밖에 도자연유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9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및 취소) ① 도지사는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구조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가 개설하고 있는 동물병원
2.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직원으로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관련 기관
3.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를 소속 회원으로 두고 있는 관리단체 또는 동물보호단체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치료 중인 동물을 죽게 하거나 장애를 입힌 경우
4. 제71조제1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조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한 보호 또는 치료가 필요

한 경우에는 먼저 치료한 후 치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치료한 경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0조(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① 제79조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의 경우에 한함)

3. 시설규모 및 현황

4.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치료 이력

② 도지사는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발급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가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명칭·소재지·대표자 성명

2.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이유

제81조(관광 자원으로의 활용) ①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자연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시장·군수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각

중 행사 및 축제에 도자연유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제82조(설치) ① 도지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를 둔다.

② 도자연유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의 지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동·식물학, 지질학, 지구과학, 조경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등 자연유산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 ④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3조(심의사항 등) 도자연유산위원회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유산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자연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도자연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5. 도자연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6. 도자연유산의 국외 반출·입에 관한 사항
7. 도자연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8.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4조(존속기한)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자연유산법 제41조의3을 따른다. 제85조(준용규정) 도자연유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유산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장 보조금 및 경비 지원

제86조(보조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관리단체가 그 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도자연유산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를 하는 경우 그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수리 또는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군수를 통하여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유자, 관리단체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7조(경비 부담) 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으로서 도 또는 시·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지 아니하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에 대하여 그 보존·관리·보호·수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88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보호물, 보호구역과 임시지정문화유산을 포함한다)의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새 소유자는 이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행하는 명령, 지시,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한 전 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관리단체가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 관리단체와 소유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9조(포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한 매장유산을 발견 신고한 자
2. 관리, 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멸실, 도난훼손의 방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3.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를 관리, 보호 육성할 책임 또는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관리, 보호육성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90조(청문)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와 관련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문화유산법 제88조, 자연유산법 제64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57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는 각각 제32조 및 제8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및 전북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로 본다.

제4조(문화유산위원회 및 자연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도지정문화유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도자연유산, 보호물, 보호구역 및 임시지정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등록된 도등록문화유산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지정자연유산의 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도지정자연유산은 이 조례에 따른 도자연유산으로 본다.

[별표 1]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의 지정기준(제9조 관련)

문화유산 의 종류	지정기준
유형문화유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상 보존가치가 있는 것 1. 건축문화유산 가. 목조: 사찰, 관아, 객사, 성곽, 향교, 서원, 사당, 누각, 정자, 주거, 정자각, 재실 등 나. 석조군: 석탑, 승탑(고승의 사리를 모신 탑), 전탑(벽돌로 쌓은 탑), 비석, 당간지주[괘불이나 불교적 내용을 그린 깃발을 건 장대를 지탱하기 위해 좌우로 세운 기둥], 석등, 석교(돌다리), 계단, 석단, 석빙고(돌로 만든 얼음 창고), 첨성대, 석굴, 석표(마을 등 영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만든 팻말), 석정 등 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옛 구조물의 흔적) 또는 건조물 및 부속물 라. 조적조·콘크리트조군: 성당, 교회, 학교, 관공서, 병원, 역사 등 2. 기록문화유산 가. 전적류(典籍類): 필사본, 목판 및 목판본, 활자 및 활자본 등 나. 문서류(文書類): 공문서, 사문서, 종교 문서 등 3. 미술문화유산 가. 회화: 일반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새나 짐승을 그린 그림)·화조화(꽃과 새를 그린 그림) 등], 불교회화(괘불, 벽화 등) 나. 서예: 이름난 인물의 필적, 사경(불교의 교리를 손으로 베껴 쓴 경전), 어필(임금의 필적), 금석(금속이나 돌 등에 새겨진 글자), 인장, 현판, 주련(기둥 장식 글귀) 등 다. 조각: 암벽조각(암각화 등), 능묘조각, 불교조각(마애불 등) 라. 공예: 도·토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칠공예, 골각공예, 복식공예, 옥석공예, 피혁공예, 죽공예, 짚풀공예 등 4. 고고자료 가. 선사시대 유물로서 특히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고분(고인돌 등을 포함한다)·조개더미 또는 절터·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

문화유산 의 종류	지정기준
	다. 전세품(傳世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 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크거나 학술적 자료로서 중요하거나 제작상 가치가 큰 것 5. 무구(武具: 전쟁에 쓰는 무기 등 도구) 가. 우리나라 전사상(戰史上) 사용된 무기로서 희귀하고 대표적인 것 나. 역사적인 명장(名將)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적으로 그 의의가 큰 것
기념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향토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1. 조개무덤, 주거지, 취락지 등의 선사시대 유적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戰蹟地)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3. 역사·교량·제방·가마터·원지(園池)·우물·수중유적 등의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4. 서원, 향교, 학교, 병원, 사찰, 절터, 교회, 성당 등의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5. 제단, 고인돌, 옛무덤(군), 사당 등의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6. 인물유적, 사건유적 등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기념과 관련된 유적
민속문화유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장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용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 어로·수렵도구, 공장용구, 방직용구, 작업장 등 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 배·수레, 역사 등 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 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문화유산 의 종류	지정기준
	증답용구(贈答用具: 편지 등을 주고 받는 데 쓰는 용구), 경방용구(警防用具: 경계·방어하는 데 쓰는 용구), 형벌용구 등 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 법회구, 봉납구(捧納具), 우상구(偶像具), 사우(祠宇) 등 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曆類)·점복(占卜)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 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도구·무대 등 2. 제1호 각 목에 열거한 민속문화유산을 수집·정리한 것 중 그 목적·내용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특히 중요한 것 가. 역사적 변천을 나타내는 것 나. 시대적 또는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것 다. 생활계층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3. 민속문화유산이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문화유산의 개별적인 지정을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 민속문화유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곳 나. 고유 민속행사가 거행되던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 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民家群)이 있는 곳 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 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 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

[별표 2]

보호물·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문화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1. 도지정 문화유산·도 문화유산자료 의 보호 구역	가. 해당 문화유산의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서로 연결하는 선에서 10미터부터 최대 100미터까지(해당 문화유산이 사찰, 사지, 서원, 향교, 관아, 객사, 회랑지 등 문화유적지와 연결될 경우 그 유적지 외곽 경계에서 10미터부터 100미터까지) 나.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2. 기념물 의 보호 구역	가. 선사시대 유적 1) 선사시대 유적 중 역사적 가치가 규명되지 아니한 유물이 흩어진 지역 2) 선사시대 유적과 역사문화환경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1) 궁터: 궁궐의 외부지역 중 해당 기념물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성터: 성곽의 외부지역 중 진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 3) 봉수대, 관아, 병영 등: 해당 기념물에 수반된 자연지형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4) 전적지: 그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다. 산업·교통·주거생활에 관한 유적 1) 역사(驛舍), 가마터: 해당 기념물과의 관련성 및 경관보호 등을 고려하여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2) 교량, 제방, 정원과 연못, 우물, 수중유적 등: 역사문화환경적으로 해당 기념물과 관련성이 있는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라. 교육·의료·종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기념물의 외부지역 중 경관보호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마. 제사·장례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경관보호

문화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바. 인물·사건 등의 기념에 관한 유적: 현재의 여건을 고려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 사. 그 밖의 기념물의 보호구역: 그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	가. 지상의 건조물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보호책·담장 또는 그 밖에 해당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동종(銅鍾)·비석·불상 등은 종각(鍾閣)·비각(碑閣)·불각(佛閣) 다. 그 밖의 문화유산은 그 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4.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조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보호책·담장 등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표 3]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지정기준(제61조 관련)

자연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도자연유산 ·도자연유 산자료	1. 동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학술적·그 밖의 가치가 큰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동물과 그 서식지·번식지·도래지 등 나. 동물자원·표본 등 다. 동물군(척추동물의 무리를 말한다) 2. 식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역사적·학술적·경관적·그 밖의 가치가 큰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노거수(老巨樹): 거목(巨木), 명목(名木), 신목(神木), 당산목(堂山木), 정자목(亭子木) 등 나. 군락지: 수림지(樹林地), 자생지(自生地), 분포한계지 등 다. 그 밖의 유형: 특산식물(特産植物), 진귀한 식물상(植物相), 유용식물(有用植物), 초화류 및 그 자생지·군락지 등 3.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학술적·그 밖의 가치가 큰 것으로써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암석, 광물과 지질경계선: 어란암(魚卵岩), 구상(球狀) 구조나 구과상(球顆狀: 중심으로부터 방사상으로 성장하여 만들어진 결정의 형태) 구조를 갖는 암석, 지각 깊은 곳에서 유래한 감람암(橄欖巖) 등 나. 화석과 화석 산지 다. 지질구조 및 퇴적구조 1) 지질구조: 습곡, 단층, 관입(貫入), 부정합, 주상절리 등 2) 퇴적구조: 연흔(漣痕: 물결 자국), 건열(乾裂), 사층리(斜層

자연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리), 우흔(雨痕: 빗방울 자국) 등 라. 자연지형과 지표·지질현상: 고위평탄면(高位平坦面), 해안·하안단구, 폭포, 화산체(火山體), 분화구, 칼데라(caldera: 화산 폭발로 분화구 주변에 생긴 대규모의 움푹한 곳), 사구, 해빈(海濱: 해안선을 따라 모래, 자갈, 조개껍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지형), 갯벌, 육계도(陸繫島: 물과 잘록하게 이어진 모래섬), 사행천(蛇行川), 석호(潟湖: 퇴적물이 만의 입구를 막아 바다와 분리되어 생긴 호수), 카르스트 지형(화학적 용해 작용으로 생성된 침식 지형), 석회·용암동굴, 돌개구멍(pot hole), 침식분지, 협곡, 해식애(海蝕崖: 파도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선상지(扇狀地: 산 아래의 평원에 하천이 운반한 모래, 자갈 등이 퇴적되어 만들어진 부채꼴 모양의 지형), 삼각주, 사주(砂洲: 바닷가에 생기는 모래사장), 사퇴(砂堆: 모래 퇴적물), 토르(tor: 풍화작용에 따라 기반암과 분리되어 그 위에 남겨진 독립적인 암괴), 타포니(tafoni: 풍화작용으로 암석 표면에 움푹 파인 구멍들이 벌집처럼 모여 있는 구조), 암괴류, 얼음골, 풍혈(風穴: 서늘한 바람이 늘 불어 나오는 구멍이나 바위틈), 온천, 냉천, 광천(鑛泉: 광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샘) 등 4. 천연보호구역 동물·식물이나 지질·지형 등 자연적 요소들이 풍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 가.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것 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것

자연유산의 종류	지정기준
	5.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그 밖의 가치가 있어 보존가치가 있는 것 가. 산지, 하천, 습지, 해안지형 나. 저명한 서식지 및 군락지 다. 일출, 낙조 등 자연현상 및 경관 조망지점 6.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가. 정원, 원림(園林) 등 인공경관 나. 저수지, 경작지, 제방, 포구, 마을, 옛길 등 생활·생업과 관련된 인공경관 다. 사찰, 서원, 정자 등 종교·교육·위락과 관련된 인공경관 7.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가. 명산, 바위, 동굴, 암벽, 계곡, 폭포, 용천(湧泉), 동천(洞天), 구곡(九曲) 등 나. 구비문학, 구전(口傳) 등과 같은 저명한 민간전승의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

[별표 4]

전북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제62조 관련)

구분	지정기준
1. 보호물	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도자연유산이 전시·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2. 도자연유산의 보호구역	가. 동물, 지형·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	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비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자연적 조건, 인위적 조건, 그 밖의 특수한 사정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 표에 따른 지정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5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 등 보수 수준의 개선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6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3.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말한다)로서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선박 매입 또는 건조 지원사업
2. 환경친화적 기자재 설치·교체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 개조 지원사업
3. 환경친화적 에너지 생산시설이나 환경친화적 에너지를 선박에 공급하기 위한 운송 및 공급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필요한 설비투자비용 지원사업
4.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 및 운송·공급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5.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 기반조성 지원사업
6. 영 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노후선박을 폐선하고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자금 지원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환경친화적 선박 구입 의무) 도지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북자치도의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선박을 조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7호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 역량 강화와 해양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북특별자치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
3. 해양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4.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5.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사회적 확산 방안
6.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3.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문화·여가 시설 등의 조성
 4.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홍보
 5.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8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및 공무원, 근로자 등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피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 그에 필요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직원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나.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

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근로자

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의회에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의정활동”이란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권한과 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직무수행”이란 공무원 등이 의회에서 근무하는 동안 관련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소송비용”이란 별표 1에 따른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의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적용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2. 「지방자치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폐회 중 개최된 위원회의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 및 직무수행

3.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출장 중의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4. 공무원 등이 직무수행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하는 업무

5. 그 밖에 의장이 정당한 의정활동 및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퇴직한 의원이 임기 중 수행한 의정활동

2. 의회에서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공무원 등이 의회 소속으로 재직기간에 행한 직무수행

제4조(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급) ① 의장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

는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심급별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은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심급별 소송이 종결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다만, 징계 절차, 수사 또는 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소송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의 지원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신청) ①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무원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소송비용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무원 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원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한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제6조(결과 제출)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한 소송비용 등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원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반환하거나 아직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비용 지급 당시 이를 제외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해야 할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면할 수 있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사유가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摘示)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정당한 의정활동 또는 적법한 직무수행의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摘示)된 경우

제8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과 환수 및 감면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② 심의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 및 공무원 등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당사자인 의원은 제외한다)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중 2명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2명
 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소송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면 자동 해산
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
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

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된다.

제13조(비밀유지의무) 심의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원」은 「의원 및 공무원 등」으로 본다.

제3조(적용범위 및 소송비용 지원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의 적용범위는 개정규정 제3조의 적용범위로, 제3조의 소송비용 지원은 개정규정 제4조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급으로 본다.

제4조(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적법한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경우 및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되어 사적(私的)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도 개정규정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지급대상으로 본다.

[별표 1]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및 구비서류

1. 착수금

구분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사건별	착수금	
민사소송	가. 본안 사건	(1)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300만원 이내	◦ 신청서 ◦ 소가증명원
		(2)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2000만원 미만 : 2,000,000원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3,000,000원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4,000,000원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6,000,000원 마.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8,000,000원 바. 10억원 이상 : 10,000,000원	
	나. 환송심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	
기타	◦ 가처분신청	◦ 본안사건 착수금의 100분의 10	◦ 신청서
	◦ 헌법재판소 관할 ◦ 대법원 전속관할	◦ 1,000만원 이내	

2. 승소사례금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	소송비용청구시의 구비서류
가. 최종심에서 소송목적의 값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 소송목적의 값 기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착수금에 승소비용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 최종심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패소한 경우 전 심급사건 지급 안함.(다만, 하급심에서 소송물 가액 기준 100분의 60 이상 승소한 뒤 상급심에서 소송대리인이 과실없이 변경된 경우 하급심 승소비용에 따른 금액은 지급한다.) 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권고결정, 조정,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형식의 경우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에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중재 시에는 착수금에 경제적 이익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라. 소송사건이 상급심에 계류 중인 때에 수임변호사·변리사가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스스로 사임한 경우에는 하급심에서 승소하였다더라도 승소사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신청서 ◦ 확정증명원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3. 그 밖의 비용

지급기준	구비서류
가. 인지대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나. 송달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다. 검증비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라. 감정료 : 실제로 필요한 금액 마. 증인여비 :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중 3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금액 바. 복사비 등 그 밖의 경비	· 신청서 ·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 서류

※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지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

[별표 2]

소송비용 등의 지원 및 환수의 기준과 절차

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별표 1의 소송비용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각 심급별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수사과정의 피의자가 된 경우 77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한도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만 지원한다. 다만, 형사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각 심급별 77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 중 변호사보수를 이유로 받은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4. 의원 및 공무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의원 및 공무원 등이 환수할 소송비용 등을 감면받으려는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					
☐ 소송 진행 중 ☐ 소송 종료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택) (사무실)			
	소속				
소송 정보	민사소송	사건명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원고) (피고)		
	형사소송	사건번호			
		호			
		공소청		피고인	
		죄명			
제출 서류: 뒤쪽 참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장 귀하					

(뒤쪽)

신청인 제출 서류	민사소송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소장 부분 2. 법률대리인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소송목적의 값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형사소송 착수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판결문 사본 2. 고소장(형사피의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3. 공소장 부분
	승소사례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확정증명원 2.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접수증
	그 밖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1. 인지·송달료의 납입영수증 2. 검증비·감정료 등 납부명령서 중 해당서류

[별지 제2호서식]

소송결과 보고서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당 사 자	원 고		소송수행자	
	피 고		소송수행자	
판결결과				
판결일자			소송물가액	
판결이유				
향후계획				
제출 서류	1. 판결문사본 2. 판결확정증명원 3. 소송비용 회수상황 관련 서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 해당사항이 없으면 빈칸으로 둡니다.

■ [별지 제3호서식]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 신청서				
신청의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주택) (사무실)		
	소속 상임 (특별) 위원회			
사 건 명	법원 호 사건			
판결결과				
감면신청액	금	원		
감면사유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 지급 증빙자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귀하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29호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사시설”이란 「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비 및 대응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 중 축사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4. “화재위험등급”이란 축사시설의 노후도, 접근성, 건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분류한 것을 말한다.
5. “화재안전시설”이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축사시설에서의 화재를 예방·대응하고, 안전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축사시설 화재예방 시행 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축사시설 화재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축사시설 현황 및 화재위험등급 분류
2.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소방훈련 방안
3. 축사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화재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축사시설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재안전시설 설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 대상 등) ① 제5조에 따른 화재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은 제2조 제1호의 축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화재·재난·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방관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축사동 사이 5미터 이상의 간격 확보
2.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설치와 정기점검
3. 축사 내 진입로 및 소방차 접근 경로 장애물 제거
4. 불연성 보온재의 사용과 기존 가연성 보온재의 단계적 교체
5. 비닐코드 전기배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금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축사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0호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7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노·사관계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건전한 노·사 관계 정착 및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장에 갈등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 따른 사적조정 등의 중재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적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1호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나. 도심 교량 및 육교

다. 지하상가 등의 지상 환기구

라. 학교 및 공공시설의 담장

마. 방음벽, 석축, 옹벽, 분수대

바. 게시대, 게시판 등

사. 전기공급시설 및 송전탑, 전신주 등

아. 등대, 부두 접안시설, 방파제, 해상 및 해안 구조물

자. 그 밖의 경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호”를 “법 제9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조제2항”을 “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다른“지방자치단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중”을 “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서”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을 “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는 100억원으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는 50억원으로 한다.

④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사업비 규모는 100억원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시상 등) ① 도지사는 경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건축물 및 거리(가로) 부문
 2. 마을 부문(한옥단지 포함)
 3. 토목 구조물(도로, 하천, 해안선, 교량 등) 부문
 4. 공원 녹지 부문
 5. 역사문화 부문
 6. 야간경관 부문
 7. 산림경관 및 도시숲 조성 부문
 8. 경관농업 부문
 9.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 ②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경관상 수상자 또는 단체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상 등을 위한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2호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장의 제목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33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8명 이하로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선정 대리인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이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인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 ⑦ 선정 대리인은 대리인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⑧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

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도지사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⑥ 도지사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선정 대리인의 추천을 요청할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위촉된 선정 대리인을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전북특별자치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3호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도지사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7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8(빈집의 철거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빈집 철거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철거 및 보상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
 2.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제공에 동의한 경우
 3. 그 밖에 빈집 철거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전단 중 “영 제12조”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시행기간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의 자금확보계획
4. 해당 사업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9조제4호의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기존주택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기존주택 중 빈집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법 제13조제2호의 토지이용계획에 포함된 건축물의 설계도서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 법 제43조의2제1항 단서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군수에게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전에 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 또는 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3. 시장·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주민설명회 또는 주민공람을 거친 후 주민의견을 첨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관계서류의 인계)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로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0. 보류지와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1.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4호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
6. “택지개발지구”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7. “지능형 교통체계”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대하여 전자·제어 및 통신 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3.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편의 증진
4. 효율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
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
7.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8.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9.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10. 택지개발지구 입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강화
11.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12.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도내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③ 모든 도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에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대중교통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기본계획에 의견을 제시할 때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수립한 대중교통계획을 심의할 때 도의 대중교통정책과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군의 대중교통계획의 변경을 요청한다.

제7조(광역교통 개선대책 개발지구에 대한 노선버스 확보 등) 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개발지구의 경우, 도지사는 입주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여건 확보를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노선버스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 초기비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선버스 운영과 관련된 세부 항목과 비용 지원 등은 해당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안전) 도지사는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

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① 도지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위해(危害)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시설 등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요금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 도지사는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교통요금의 경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12조(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

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일부 결과(경영 평가 결과는 제외한다)를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에게는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포상을 하거나, 재정 지원 등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에서 최하점을 부여한다.

제13조(대중교통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대중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대중교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대중교통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대중교통행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 도입에 관한 사항
5. 오지·도서 및 벽지 등 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2개 이상의 시·군 또는 시·도와 관련된 교통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각종 제안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관련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대중교통업무 담당 국장
2. 교통관련 과장급 이상 경찰공무원

3. 도의회 의원

4.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

5.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

6.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7. 버스운송사업자 대표

8. 버스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대중교통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보조금 지원 및 사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자금을 보조하는 경우 그 자금의 사용 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운영자는 그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도지사는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한 대중교통운영자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지능형교통체계 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대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74조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지방계획을 수

립하여야 한다.

- 제1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전북 특별자치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5호

전북특별자치도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3자녀 이상 가구”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모두 18세 이하여야 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6인승 이상, 11인승 이하의 자동차를 말하며, 특수 목적을 가진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3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2. 신차를 구매하였을 것

제4조(지원내용)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차량 구입비 일부를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 금액과 비율, 지원 우선순위 등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며,

차량의 종류와 가격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효과적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현황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3자녀 이상 가구 차량 구입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차량 구입비를 지원받은 3자녀 이상 가구가 2년 안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시도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6호

전북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발생원 감량”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다.

4. “처분”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 등을 소각 또는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료”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이나 동물·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 중 반추동물을 제외한 동물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및 성장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것으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6. “퇴비”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 비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7. “감량기”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사료화 또는 부숙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치를 말한다.
8. “다량배출사업자”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른 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의 원칙)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 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은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처분되는 양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원순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

물의 발생 억제 및 자원순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에 대한 홍보·교육 등)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홍보·교육을 매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시·군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이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사업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원화시설 설치지원) 도지사는 시·군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군,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7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가구 구성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가구”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보장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정도가 실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족한 경우 또는 그 외 사유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재해구호법」,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등 다른 법률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급여를 우선 연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조사 및 선정·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구성원과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거나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에는 위기가구의 거주지 방문 또는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한 경우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결정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발굴 및 추천된 위기가구의 지원대상 적합 여부 심사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후 및 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금품 등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환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원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절차, 이의신청, 환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임 및 위탁) 도지사는 대상자의 위기가구의 조사·확인 및 지원 등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교부·정산·환수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재정지원에 대하여 정산 및 평가를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민간구호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8호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생등급 지정업소”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6. “운영자금”이란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식품위생 종사자 및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육성”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 지원”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를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용자”로 한다.

제6조 중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의 육성”을 “모범음식점, 향토음식점 또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의 운영지원”으로 한다.

제7조 중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자금”을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지정된 자 중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8조 중 “시설개선자금 및 육성자금”을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한다.

제9조 중 “육성자금”을 “운영자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0. 27.)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 교 육 감 유 정 기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39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내 초등학교 학생의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한글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그 문화유산을 보전·계승 및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교 학생의 한글사랑 인식을 높이고 한글 사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한글사랑 교육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초등학교 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한글사랑 교육에 필요한 교재 개발·보급
2. 한글사랑 글쓰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 등

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글 교육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기여한 초·중·고등학생, 교원,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0. 27.)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 교 육 감 유 정 기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40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자유학기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역량을 기르고, 진로를 탐색하여 미래에 대해 탐색·설계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유학기제”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과정중심 평가를 강화하고 다양한 진로탐색활동을 편성·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자유학기제가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자유학기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자유학기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기본방향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3.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방안
4.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생·학부모·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자유학기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료 개발 및 보급) 교육감은 자유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연수 등)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교원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2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5. 10. 27.)에서 의결된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

부 교 육 감 유 정 기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제5941호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장 감사관 소관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 제4호 가목”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8조 제1항”을 “법 제8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 중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를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로 한다.

제2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제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

치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을 “교원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으로 한다.

제3장 정책기획과 소관

제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5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을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를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을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으로 한다.

제4장 미래교육과 소관

제7조(「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북도를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전라북도의회”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제14조 중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5장 학교안전과 소관

제8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제8조 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루어지”를 “이루어지는”으로 한다.

제6장 예산과 소관

제10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비용”라”를 ““비용”이라”로 한다.

제7장 교육협력과 소관

제11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전북특별자치도청”을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정부조직법 제3조”를 “「정부조직법」 제3조”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전북특별자치도청”을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으로, “행정자치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거버넌스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교육거버넌스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거버넌스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 교육법」 제34조”를 “「초·중등교육법」 제34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1”을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13”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를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로 한다.

제13조(「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원도심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도교육청 및 전북특별자치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으로 한다.

제1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23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3조”로 한다.

제15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16조(「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8장 문예체건강과 소관

제17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6조제4호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로 한다.

제18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 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8조”를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9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0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상 안전교육”을 “수상안전교육”으로 한다.

제2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2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을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최·주관하는 단체”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14조 중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를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6조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제2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을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체육특기자”란을 ““체육특기자”란”으로 한다.

제6조 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로 한다.

별표 중 연번 3의 체육대회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기(배) 및 교육장기(배) 대회
-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대회

제2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청”을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으로 한다.

제25조(「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4호”를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2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민기초생활 향상법」 제2조제1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9장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제27조(「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삼례공업고등학교”를 “수소에너지고등학교”로 한다.

제28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개

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 이용과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4호 중 “전라북도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전라북도 소재”를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로 한다.

제29조(「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김제자영고등학교”를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등학교”로, “109번지”를 “109”로 한다.

제30조(「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을 “「평생교육법」 제21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중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제3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과학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다른 법령 및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3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른 법령 및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3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제10장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제35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3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6조 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다른 법률이나 조례”를 “다른 조례”로 한다.

제38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39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한다.

제40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전라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41조(「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자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를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로, “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를 “특수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유아교육법」 제20조”로 한다.

제12조 중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제11장 총무과 소관

제42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39조”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로 한다.

별표 1 직인란의 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제4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를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정성별영향평가란 법 제10조2”를 ““특정성별영향평가”란 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11조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45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다른 법령 또는 등에”를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로 한다.

제4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2장 행정과 소관

제47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단서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를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육기본법」 제8조”를 “「교육기본법」 제8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농어촌”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농산어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태조사”로 한다.

제13장 재무과 소관

제49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법 제92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로 한다.

제50조(「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한다.

제5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영 제92조의7”을 “영 제116조의2”로 한다.

제52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교육감”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의2”를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53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7조제3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54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제14장 노사협력과 소관

제55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예산회계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을 “「국가재정법」·「물품관리법」 및 「지방재정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소관 부서”를 “주관부서”로 한다.

제57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 및 제39조의2를”을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로 한다.

제58조(「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주민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 제2조”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로, “전북특별자치도 법제심의위원회”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5장 시설과 소관

제59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시공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60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관한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관한 조례”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도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교육감”을 각각 “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도교육감”을 각각 “교육감”으로 한다.

제6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개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 관 영 인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제3297호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가 포함된 자치법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행정규제의 등록, 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장 규제의 등록 절차

- 제3조(규제의 등록 요청) 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정비하려는 때에는 해당 규제에 관한 자치법규가 공포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등록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이하 “규제담당과장”이라 한다)에게 규제 등록 요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제 등록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

- 제4조(미등록 규제의 등록) 규제담당과장은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규제를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규제와 관련된 주관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심사의 절차

- 제5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 검토)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주관과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심사 요청 및 결과 통보) ① 주관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규제담당과장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며, 심사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차 규제심사: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를 하기 전에 입법안의 규제 신설·변경 내용의 검토, 규제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의 저촉 또는 위배 여부, 입법안에 중요 규제가 있는 경우 중요규제 판단의 적정성 및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는 단계

2. 2차 규제심사: 입법예고 종료 후에 입법예고 결과와 반영 여부 등 규제 관련 변동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며, 중요규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는 과정을 포함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생략한다.

② 주관과장은 규제담당과장에게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법안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영향분석서는 중요규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출한다.

1. 규제신설·정비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③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주관과장에게 그 사유와 소요기간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중앙사무 이양 등에 따른 입법안, 신규로 제정하는 입법안 등 규제심사 난도

가 높거나, 입법안에 별표 2에 따른 중요규제가 있어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30일 이내

2. 제1호 이외의 입법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경우: 15일 이내

제7조(규제심사 원칙) 규제심사는 규제의 대상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정되었는지 여부, 규제의 수단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사하며 그 과정은 공정하고 신속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반려) 규제담당과장은 규제심사 요청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규제 내용이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경우
2. 입법안의 규제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인가·승인·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가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수정·보완토록 요구하였으나 그 기한에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입법안에서 규제를 신설·변경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제4장 규제의 재검토

제9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의 존치 또는 정비 여부를 결정하고 관련 자치법규의 입법안과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관과장이 심사 요청한 입법안과 규제정비계획서에 대한 심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규제 정비 의견에 관한 심사) ① 주관과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규제 정비 의견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검토서를 작성한 주관과장은 기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주관과장이 제2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규제담당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에 따라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규제가 개선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제11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소관업무)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농산업경제 분과위원회: 산업·경제·금융·농축산·물류 분야 등 업무의 담당 실·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문화건설안전 분과위원회: 문화·도시·건설·안전 분야 등 업무의 담당 실·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행정자치교육 분과위원회: 행정·소방·교육 분야 등 담당 실·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환경복지 분과위원회: 환경·복지 분야 등 담당 실·국 소관사무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 소관사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를 정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한 사항을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세칙) 도지사는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중요규제 판단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신설·변경하는 규제의 내용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 가. 명백하게 진입이나 경쟁이 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 나. 국제기준에 비취 규제 정도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 다. 다른 행정기관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규제와 심각한 불일치 또는 간섭을 발생시키는 규제
 - 라. 이해 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경제적·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 및 갈등이 우려되는 규제
 - 마. 산업 분야의 시장 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 바. 규제 수준 및 정도가 현저히 부당하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규제
2. 신설하거나 정비하고자 하는 규제의 내용과 성격, 방식 등이 아래 각 목 어느 하나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본다.
 - 가. 신설하는 규제.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신설 규제는 기존규제로 보며, 관련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기존 규제의 내용을 기준으로 강화 또는 완화를 판단한다.
 - 나. 변경하고자 하는 규제 중 기존 규제의 내용을 강화하는 규제
3. 위 두 가지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한 규제의 기준 또는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구체적이어서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선택재량의 영역이 사실상 없거나, 그 내용을 가감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내용 변경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중요규제로 보지 아니한다.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제3조제1항 관련)

(1쪽 앞)

① 규제사무명		② 규제등록번호	
③ 규제등록일		④ 등록 사유	
⑤ 담당 부서		⑥ 소관부처	
⑦ 부 문		⑧ 유 형	
⑨ 근 거 법 령	특별법		
	상위법령		
	조례		
	규칙		
	고시 등		
⑩ 공포일		⑪ 규제시행일	
⑫ 재검토기간 만료일		⑬ 재검토 관련 조항	
⑭ 규제 내용			
⑮ 특별법 이양 규제 개선 내용		⑯ 개선 유형	
⑰ 등록 이후 변동 경과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1쪽 뒤)

- ① **규제사무명**: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에는 등록된 이름을 그대로 기재
- ② **규제등록번호**: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해당 번호를 그대로 기재
- ③ **규제등록일**: 신설 규제인 경우 기재 안 함. 기존 등록규제인 경우 **규제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를 기재
- ④ **등록사유**: 신설 규제, 누락 규제 중 해당 사항 기재. 기존 규제의 경우 등록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
- ⑤ **담당부서**: 해당 규제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주관부서(국, 과, 사업소 등) 기재
 ☞ 두 개 이상의 부서가 공동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주관하는 부서를 기재한 후 괄호 속에 조례 등의 관련 관리 부서 기재
- ⑥ **소관부처**: 해당 업무 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 ⑦ **부 문**: 규제 근거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아래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1. 행정일반 2. 지방행정 3. 지방재정 4. 경찰교통 5. 소방민방위 6. 국가보훈
 7. 교육학술 8. 체육청소년 9. 문화공보 10. 재정경제 11. 농지농정 12. 축산
 13. 산림 14. 수산 15. 상공업 16. 에너지 17. 국토도시개발 18. 주택건축도로
 19. 수자원 20. 토지지적 21. 건설 22. 보건위생 23. 의료약사 24. 사회복지 25. 환경
 26. 노동 27. 운송물류 28. 관광 29. 해운항만 30. 정보통신 31. 기타

- ⑧ 유 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를 참조하여 선택**하고 괄호 속에 기재

-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세부유형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세부유형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 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규제등록서 작성 방법

(2쪽)

- ⑨ **근거법령**: 규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조항번호** 그리고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 등의 명칭과 조항 번호를 모두 기재**
- ⑩ **공포일**: 관련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일 기재
- ⑪ **규제시행일**: 해당 규제 사무의 적용 시행일 기재
 ☞ 대부분 규제 공포일이 해당되나, 일부 규제의 경우 시행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⑫ **재검토 기간 만료일**: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연월일)**을 적고,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 ⑬ **재검토 관련 조항**: 규제 재검토 기한을 정한 조례 등의 해당 **근거 조항 번호** 기재
- ⑭ **규제 내용**: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제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
 ☞ 조례 등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놓지 말고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알기 쉽게 정리
- ⑮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 개선 내용**
 -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 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내용** 기재
- ⑯ **개선 유형**: 해당 규제가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발생한 규제인 경우 관련 **개별법령 상의 규제와 비교하여 다르게 규정한 경우**, 그 개선 유형을 “**강화**”. “**완화**”, “**인용**”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 ⑰ **등록 이후 변동 경과**: 규제가 등록된 이후 **규제개선이 이루어진 경우**마다 **자치법규가 개정된 날짜와 변경 유형, 개선된 내용**을 간략히 기재
 ☞ 예시 : - 2022. 12. 13. 완화(신고서 수리 기간 7일 → 5일)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규제 신설·정비 계획서(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관련)

조례·규칙명 :

분야	규제 사무명	근거 법령	종전의 규제 내용		규제 정비 내용			개선 유형	사유
			조항	규제 사항	조항	규제 사항	중요규제 해당 여부		

※ 작성요령

- 분야 : ① 경제, ② 관광문화, ③ 도시개발, ④ 사회복지, ⑤ 농수축산업,
⑥ 환경, ⑦ 소방방재 ⑧ 기타
- 규제사무명 : 기존 등록규제명 기재, 신설의 경우에는 규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명하여 기입 : 예) 000시설기준, 0000행위제한
- 근거법령 : 규제의 근거가 있는 법률 및 관련 조항 * 특별법위임조례의
경우에는 특별법 조항 및 관련 법률을 모두 기입
- 종전의 규제 내용 : 기존 조례 등의 개정인 경우 조례명과 규제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기입
 - *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 및 규제 사항 기입
- 규제 정비 내용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 기입.
(중요규제 해당여부는 ○, X로 기입)
- 개선 유형 : 종전의 규제 내용과 달라진 규제정비 내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완화”,
“인용”, “강화”, “신설”, “폐지”로 구분하여 기입
단, 조례 제9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
는 경우에는 “존치”라고 기입
(특별법 사무이양에 따라 발생한 규제의 경우는 개별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완화”, “강화”, “인용”만 기입)
- 사유 : 규제정비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간략히 기입(국제기준 적용, 기업경영 애로
해소, 투자 인센티브 제공, 청정환경 보호 등)
단, 규제의 재검토 결과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치 사
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서술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제5조제1항 관련)

I.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쪽 앞)

1. 등록번호							
2. 규제사무명	신설		강화		완화		폐지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5. 근거법령 등							
6. 규제 근거 의 분류	○ 전북특별법 근거 특례 관련 규제 () ○ 개별법 위임 규제 () ○ 전북특별법 근거 기준 이양에 따른 규제 () ○ 자치사무 규제 ()						
7. 종전 규제 의 내용	○ -						
8. 규제의 신 설(변경) 내 용	○ -						
9. 기타	○ -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쪽 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2쪽 앞)

I. 분석 대상 규제 개요

분석서 기재사항	작성 방법
1. 등록번호	기존 규제의 경우 그 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신설 규제는 기재하지 않음
2. 규제사무명	심사 요청한 규제의 내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무명을 부여
3. 규제의 구분	신설규제, 기존규제의 강화·완화·폐지, 존속기한 연장인지를 구분하여 ○로 표시
4. 소관부서 및 책임자	관련 조례 부서명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한 과장급의 직위와 직급, 이름을 기재
5. 근거법령 등	- 규제의 근거 법령과 조항을 기재(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하위 법령까지 모두) - 전북특별법 관련 규제의 경우에는 특별법과 관련 개별법령까지 모두 기재
6. 규제 근거의 분류	규제가 근거하는 법령에 따라 분류하여 ○로 표시
7. 종전 규제의 내용	- 해당 조례의 기존 규제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기재 - 특별법 사무이양 규제의 경우에는 개별법령상의 기존규제의 내용을 기재 - 규제의 신설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	- 신설 규제의 경우 심사 요청한 규제 내용을 요점만 간략히 기재 - 기존 규제의 정비의 경우 종전 규제의 내용 중 정비하려는 사항 기재 - 심사 요청하는 규제와 대비될 수 있도록 간략히 기재
9. 기타	그 밖에 규제 신설·변경과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사항 기재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방법

(2쪽 뒤)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분석서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규제 신설 등이 필요하게 된 문제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분석·기술 •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로 인한 긍정적인 기대효과(장기적 성과 또는 정책목표)도 함께 제시
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	• 규제의 신설·변경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간의 의견 대립 상황 •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여부 및 입법예고 시 주민이 제시한 의견과 그 수용 여부 요약 기재 • 규제의 신설·변경 내용이 입법화되는 경우 예상되는 이해관계자의 반발 또는 갈등 상황과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안 제시
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	•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 규제 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 기업활동 저해 요소의 포함 여부
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 용이성 •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판단 •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7. 그 밖의 관련 참고 자료	• 위에 기재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설 또는 정비가 필요한 것을 입증 또는 보충할 만한 참고자료 제시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규제입증책임 검토서(제10조제2항 관련)

건의 제목				
건의자			건의 일자	
소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	(조례/규칙 명) 제00조			
검토 결과	☐ 수용	☐ 일부 수용	☐ 중장기 검토	☐ 불수용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개선 검토 의견> ○			
추진 일정	○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규제입증책임 심사 발굴 과제 관리카드(제10조 제4항 관련)

과제명			관리 번호	
건의자			건의 일자	
소관 부서	과장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담당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건의 내용	(조례/규칙 명) 제00조			
규제입증 심사 결과	☐ 일부 수용	☐ 중장기 검토	☐ 수용 곤란	
	<규제명> ○ <근거 규정 입증> ○ <심사 결과> ○			
추진 일정	○ 개선 방안 마련(~0.00.) ○ 개정 완료(~0.00.)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56호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관계도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 및 익산시 도시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익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06,925,496	-	506,925,496	100.0	
도 시 지 역	76,088,724	-	76,088,724	15.0	
관 리 지 역	216,831,974	증) 9,156.0	216,841,130	42.8	
보 전 관 리 지 역	48,407,608	-	48,407,608	9.5	
생 산 관 리 지 역	76,240,971	감) 8,868.7	76,232,102.3	15.0	
계 획 관 리 지 역	92,183,395	증) 18,024.7	92,201,419.7	18.2	
농 립 지 역	192,083,553	감) 9,156.0	192,074,397	37.9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21,921,245	-	21,921,245	4.3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3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612-7번지 일원	생산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역	8,868.7	100%	• 익산 공공승마장 확장을 위해 체육시설 결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9,156.0	100%	

2.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관계도서 : “실음생략”

3.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정책과(063-280-4498) 및 익산시 도시개발과(063-859-55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5-357호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고시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에 대한 개요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고시 사항

1. 계획명칭 :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
2. 계획기간 : 2018 ~ 2037년(20년)
3. 계획근거 : 산림기본법 제11조 제2항 등에 규정된 법정계획
4. 비전 및 목표
 - 비 전 : 숲으로 만드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숲으로 풍요로운 전북특별자치도
 - 목 표 :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 산림산업으로 돈이 되는 산림,
도민 모두가 누리는 행복한 산림
5.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5대 전략 및 24대 핵심과제)
 -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등 6과제
 - 산림재난 대응력 고도화로 도민 안전확보 ⇒ 과학적 산불예방 및 진화역량 강화 등 4과제
 - 산림산업 육성으로 성장동력 창출 ⇒ 목재산업 육성 등 5과제
 - 임업인 경영지원 및 산촌 활성화 ⇒ 안정적인 임업경영 지원 및 미래 임업인 육성 등 3과제
 - 누구나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 ⇒ 복합 산림복지시설 확대 등 6과제
6. 투자 소요액 : 6조 2,656억원
 - 국고 2조 8121억원(45%), 도비 8728억원(14%), 시군비 1조 6136억원(26%), 자부담 등 9671억원(15%)
7. 제6차 지역산림계획 변경서는 도 및 각 시·군 산림자원관리 부서에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749호

도로 사용개시 및 폐지의 공고

「도로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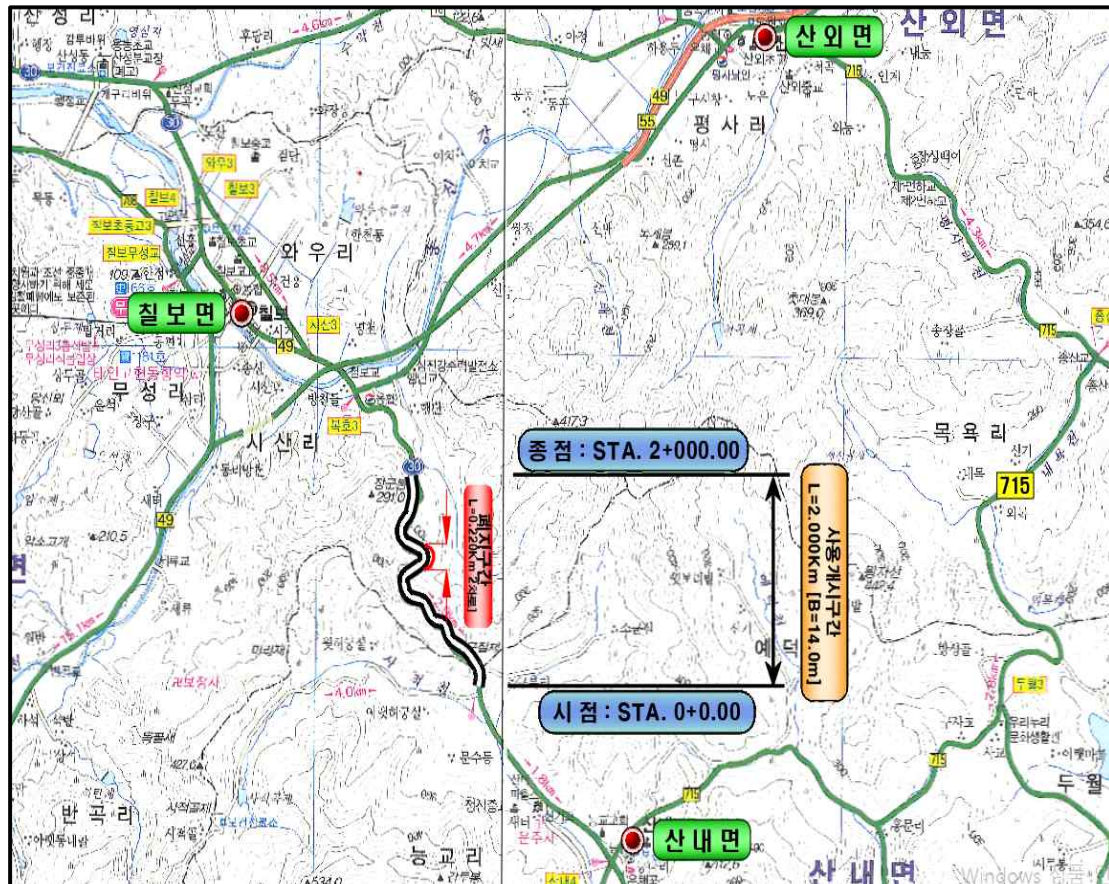
1. 도로의 종류 : 국도
2. 노선번호·노선명 : 국도 30호선(태인~산내)
3. 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

구 분	행 정 구 역		연장 (km)	비고
사용 개시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산내면 능교리 산 811-2	2.0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산 116-5		
폐지	시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산 69-1	0.22	
	종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산 92-12		

4. 주요통과지 : 전북 정읍시 칠보면~산내면
5. 사용개시(폐지)일 : 2025년 11월 14일
6.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7. 열람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과(☎063-290-671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설과(☎063-539-5862)
8. 기 타 :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첨부서류 : 지형도 (5만분의 1)

첨 부	지 형 도(사용개시 및 폐지 구간)
-----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763호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14일

1. 법인의 명칭 : 사단법인 희망찬코리아
2. 대표자 : 정은철
3. 주된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번길 17, 비101호(삼천동1가)
4. 주된 사업
 - 장애인의 수영, 배드민턴, 농구 및 탁구의 스포츠활동 및 전문선수 육성
 - 장애인 스포츠단 운영업
 - 기타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수중운동 재활관련 모든 서비스사업(자격증 교육 및 발급포함)
 - 운동인지 재활관련 모든 서비스사업(자격증 교육 및 발급포함)
 - 교육프로그램 관련 서비스 제공사업(수영교실 외)
 - 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공공기관시설 위탁에 관한 모든 사업(체육시설 외)
 - 장애인 고용창출에 관한 모든 서비스 사업
 - 기타 장애인 관련 일체의 사업 등
 - 장애인 보호작업장 시설 관련 사업
 - 직업재활훈련 관련 일체 사업
5. 변경연월일 : 2025. 11. 5.
6. 변경구분 : 제7조(회원의자격), 제22조(회원의권리) 정관 변경 및 임원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764호

비영리법인 대표자 변경 공고
(사단법인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5년 11월 14일

■ 공 고 사 항

- ① 허가번호 : 제2025-22호
- ② 법 인 명 : 사단법인 애니멀 프리 이니셔티브
- ③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8길 16, 1층(신동)
- ④ 변경사항 : 대표자 변경(이형섭 → 이은혜)
- ⑤ 허가증 재교부 연월일 : 2025. 11. 11.

군산시 고시 제2025-208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25-184호(2025.10.10.)에 의거 우리시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851번지 외 6필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건설기계 성능시험장 수소파워트레인 시험동 등 증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부지면적 : 176,895.9㎡(변경없음)
 - 나. 건축계획(변경)

구 분	건 축 개 요		증·감	비 고
대지면적	176,895.9㎡ (변경없음)			
	기 정	변 경		
건축면적	7,402.51㎡	7,458.77㎡	증) 56.26㎡	
건 폐 율	4.19%	4.22%	증) 0.03%	
건축연면적	8,890.07㎡	8,946.33㎡	증) 56.26㎡	
용적률산정연면적	8,890.07㎡	8,946.33㎡	증) 56.26㎡	
용 적 률	5.03%	5.06%	증) 0.03%	
주 구 조	일반철골구조, 경량철골구조			
건물규모	주9동부2동/지상3층	주11동부2동/지상3층		
주 용 도	교육연구시설			

- 금회 주10동/1층 교육연구시설(전기실) 연면적 20㎡ 증축
- 금회 주11동/1층 교육연구시설(컴프레샤실) 연면적 36.26㎡ 증축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 군산시장(신성장산업과)

나.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인가고시일 ~ 2026.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붙임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지방자치단체 시행)

8. 관계도서 : 게재 실음생략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읍면동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나포면 나포리	851	잡	154,109.9	154,109.9	군산시				
2	“	729-4	잡	408	408	군산시				
3	“	312-5	전	2,483	2,483	군산시				
4	“	산16-6	임	5,713	5,713	군산시				
5	“	산18	임	13,003	13,003	군산시				
6	“	산18-1	임	683	683	군산시				
7	“	산253	구	496	496	군산시				
계				176,895.9	176,895.9					

익산시 고시 제2025-206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5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익산시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류2호 외 4개소)사업
- 사업의 명칭 : 함열 와리 공동주택 진출입로 확장 및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변경)

가. 기정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소로2류2호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 L=74.6m, B=2m, 면적=687㎡	
소로1류8호		• L=94.3m, B=3m, 면적=186㎡	
소로1류814호		• L=126.3m, B=4m, 면적=508㎡	
소로2류3호		• L=97.8m, B=2m, 면적=233㎡	
소로1류815호		• L=125.3m, B=2~5m, 면적=471㎡	

나. 변경

시 설 명	사업시행지 위치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소로2류2호	함열읍 와리 687번지 일원	• L=74.6m, B=2m, 면적=688㎡	(증 1㎡)
소로1류8호		• L=94.3m, B=3m, 면적=186㎡	
소로1류814호		• L=126.3m, B=4m, 면적=508㎡	
소로2류3호		• L=97.8m, B=2m, 면적=233㎡	
소로1류815호		• L=125.3m, B=2~5m, 면적=471㎡	

*변경 사유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에버종합건설 대표 송명순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12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5. 12. 28.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계재 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익산시 합열읍 와리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합 계			7,944	2,085					
1	638 - 15	대	55	55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2	638 - 16	대	24	24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3	668 - 8	대	58	58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4	669 - 5	전	58	58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5	669 - 6	전	8	8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6	670 - 20	답	26	26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7	670 - 21	답	49	49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8	674 - 5	전	77	77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9	686 - 52	전	8	8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0	686 - 53	전	102	102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1	686 - 54	전	1	1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2	686 - 55	전	110	110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3	686 - 56	임	40	40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4	686 - 58	전	38	38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5	687 - 5	전	72	72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6	687 - 6	전	31	31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7	689 - 9	전	11	11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8	689 - 10	전	3	3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19	689 - 11	전	23	17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20	690 - 7	전	100	100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21	690 - 8	전	75	75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22	691 - 5	전	46	46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23	1129 - 64	도	6	6	기획재정부				
24	1129 - 66	도	20	20	기획재정부				
25	1129 - 68	도	13	13	기획재정부				
26	1129 - 70	도	9	9	기획재정부				
27	163 - 5	도	3,572	58	익산시				
28	196 - 42	답	31	31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용로40,**층			

번호	지 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29	196 - 3	유	9	9	익산시				
30	196 - 4	답	3	3	익산시				
31	196 - 43	답	39	39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층			
32	196 - 35	도	194	2	익산시				
33	196 - 44	답	29	29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층			
34	196 - 45	답	89	89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층			
35	196 - 46	답	160	160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층			
36	685 - 4	전	18	14	익산시				
37	686 - 57	전	17	17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층			
38	635 - 1	답	731	6	익산시				
39	670 - 2	도	1,506	88	익산시				
40	670 - 17	답	118	118	익산시				
41	670 - 18	답	3	3	주택도시****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층			165/330
					익산시				165/330
42	670 - 19	답	42	42	익산시				
43	1129 - 58	도	46	46	기획재정부				
44	1129 - 60	도	17	17	기획재정부				
45	669 -	전	121	121	익산시				
46	689 - 7	전	136	136	익산시				

익산시 고시 제2025-207호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사업인정에 관한 고시
(익산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1. 익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의 승인·고시하고자 합니다.
2. 또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된 「익산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고시하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고시합니다.
3.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5년 11월 14일

1.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주차장	익산시 남중동 12-1번지 일원	익산시 남중동 14-14번지 일원	4,755	증) 3	4,758	2009. 04.10.	

- 나.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 내용	결정 사유
23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 익산시 남중동 12-1 일원 → 남중동 14-14일원 - 면적 : 4,755m ² →4,758m ² (증3m ²)	○ 지적 분할 및 지적 변경에 따른 면적 및 대표지번 변경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남중동 14-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사업
- 사업의 명칭 : 북부시장 주차장 부지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

- 사업면적 : 4,758m²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익산시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사. 관계도서: “계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익산시 남중동	12 - 1	차	851	851		익산시			
2	익산시 남중동	14 - 86	대	139	139		익산시			
3	익산시 남중동	14 - 90	도	230	230	김*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4	익산시 남중동	14 - 14	차	2,054	2,054		익산시			
5	익산시 남중동	14 - 15	대	172	172		익산시			
6	익산시 남중동	14 - 80	도	156	156	김*섭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			
7	익산시 남중동	14 - 34	차	1,156	1,156		익산시			

익산시 고시 제2025-211호

익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호,소로1류1호)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호,소로1류1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익산시청 도시개발과(☎063-859-5592)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익 산 시 장
2025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위 치 : 익산시 왕궁면 동춘리 117-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1호,소로1류1호)사업
 - 사업의 명칭 : 왕궁면 코스트코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또는 면적(변경없음)
 - 중로2류1호선 : L=89m, B=18.5m, 면적=2,455m²
 - 소로1류1호선 : L=179, B=10.5m, 면적=1,966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 명 : 유한회사 삼학콘크리트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18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준공예정일
 - 기 정 : 2025. 12. 31.
 - 변 경 : 2026.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붙임
7. 관계도서: “계재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 입 지 적 (㎡)	토 지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시	읍면 동리	지 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익산	왕궁면 도순리	316-9	장	43,898	339	유한회사 삼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	한국원 심력콘 크리트*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 (방이동,대중빌딩)	가압류	
									주식회사 하나**	서울 중구 을지로 ** (을지로1가)	근저당	
									주식회사 신한**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태평로2가)	근저당	
2	익산	왕궁면 동촌리	113	답	1,765	97	송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19길 72-21, ***동 ***호 (부송동,부송라운프라 이빗아파트22단지)				
3	익산	왕궁면 동촌리	113-1	답	2,225	389	송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19길 72-21, ***동 ***호 (부송동,부송라운프라 이빗아파트22단지)				
4	익산	왕궁면 동촌리	115	답	358	333	농업회사 법인 유한회사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무왕로 ****				
5	익산	왕궁면 동촌리	117-4	장	27,193	2,968	유한회사 삼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	주식회사 하나**	서울 중구 을지로 ** (을지로1가)	근저당	
									주식회사 신한**	서울 중구 세종대로 9길 **(태평로2가)	근저당	
6	익산	왕궁면 동촌리	117-9	임	520	295	유한회사 삼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				

정읍시 공고 제2025-1840호

정읍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정읍시 금봉동 906-15번지 정읍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정 읍 시 장
2025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금봉동 906-1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 명 칭 : 정읍 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금회) 7,549㎡
 - 규 모 : (건축면적) 124.84㎡ (연면적) 244.28㎡, 2층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정읍시 충정로 234, 정읍시청
 - 성 명 : 정읍시장(노인장애인과장)
5. 사업기간 : 2025. 2. 18. ~ 2025. 12. 31.(실준공일자 : 2025. 10. 28.)
6. 기타사항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의 공사완료에 대한 세부 내용 및 관계 도서는 정읍시청 도시과(☎063-539-5782)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고시 제2025-2183호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같은 법 제90조 및 시행령 제99조 규정과 관련하여 서류열람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남 원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남원시 금동 1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남원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 명 칭 :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기정 면적 : 2,136.31㎡ (문화시설 전체면적 5,838㎡)
 - 변경 면적 : 2,872.00㎡ (문화시설 전체면적 5,83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남원시장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기 정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6. 12. 31.
 - 변 경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7. 12. 31.
6. 열람기간 : 도보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7. 열람장소 : 남원시청 도시과(☎063-620-6452), 남원다움관(☎063-620-5670)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참조
9. 관계도서 : 게재생략
10. 열람기간 내 관계 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동 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 지 소 재 지			면 적 (㎡)		소 유 자		소유권 외의 권리자		비고
	동	지 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권리명	권리의 종류	
합 계 (6필지)				8,850	2,872	-	-			
1	금동	134-2	대	168	168	-	남원시			
2	금동	137-2	대	164	164	-	남원시			
3	금동	145	대	172	172	남원시 금동 145	이정화			
4	금동	146	대	2,036	2,036	-	남원시			
5	금동	166	대	109	109	-	남원시			
6	금동	565-1	도	6,201	223	-	국 (건설교통부)			

[붙임 2]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번호	편 입 토 지 조 서								
	토 지 소 재 지			물건의 종류	구 조	수 량	소 유 자		비고
	동	지 번	지목				주 소	성 명	
합 계 (1필지)									
1	금동	145	대	주택	목조 조적 함석기와	52.00㎡	남원시 금동 145	이정화	
2	금동	145	대	창고 및 보일러실	목조 조적 함석기와	9.75㎡	남원시 금동 145	이정화	
3	금동	145	대	사랑채	목조 함석기와	31.50㎡	남원시 금동 145	이정화	
4	금동	145	대	화단 (백일홍, 장미 등)	-	총 22주	남원시 금동 145	이정화	

완주군 고시 제2025-153호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5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산7-2 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새만금-전주 신설구간 내 변전소 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중로1-1호선 : A=3,001m² 중 1,580m²

구분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2.99	18.52	591.51	650.07	34.20	716.15	
주1	지상1	18.52	591.51	564.39	23.46	587.85	
	지하1			85.68	42.62	128.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25. 3. 10. ~ 2026. 12. 30.
 - (변경) : 2025. 3. 10. ~ 202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게재생략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완주군 고시 제2024-154호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축법」 제11조 및 제29조에 따라 의제 협의된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5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상관면 의암리 산125-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교통광장)사업
 - 명 칭 :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변전소 부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당초) 사업면적 : A=14,832㎡ 중 3,472.75㎡
 - (변경) 사업면적 : A=14,832㎡ 중 2,424㎡

구분	건축면적(㎡)			바닥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소계	521.09	-	521.09	605.59	-	605.59	
주1	기계실, 계단실	-	521.09	97.93	-	97.93	
	변전소			507.66	-	507.6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도로공사장
 - 주 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24. 11. 14. ~ 2026. 12. 30.
 - (변경) : 2024. 11. 14. ~ 2025.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 불임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생략

[붙임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1필지					14,832	2,424						
1	상관	의암	산125-1	임	14,832	2,424	국토교통부					

완주군 고시 제2025-155호

완주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사설: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삼례 폐수종말처리장 녹지 관리를 위한 완주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사설: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5년 11월 14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삼례읍 후정리 142-1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사설: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 명 칭 : 삼례 폐수종말처리장 녹지 관리시설(임시사무소) 설치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46,391㎡ 중 2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완주군수(산림녹지과장)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5. 1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종 류	
1필지						7,043	27.0					
1	삼례	후정	142-1	공	7,043	27	완주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고창군 고시 제2025-191호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지형도면 승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고창군 도시디자인과(063-560-25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5년 11월 14일

고 창 군 수

1.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07,790,640.7	-	607,790,640.7	100.0	
도 시 지 역	32,465,438.4	-	32,465,438.4	5.3	
비 도 시 지 역	575,325,202.3	-	575,325,202.3	94.7	
관 리 지 역	274,668,312.3	증) 9,524	274,677,836.3	45.2	
보 전 관 리 지 역	74,384,557.7	-	74,384,557.7	12.2	
생 산 관 리 지 역	101,859,536.0	-	101,859,536.0	16.8	
계 획 관 리 지 역	98,424,218.6	증) 9,524	98,433,742.6	16.2	
농 립 지 역	257,262,122.0	감) 9,524	257,252,598.0	42.3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43,394,768.0	-	43,394,768.0	7.2	

※ 참고 : 전북특별자치도고시 제2025-353호(2025.11.07.)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

2)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문화시설	고창 군립미술관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873번지 일원	-	증)7,732	7,732	“금회”	

○ 건축물 결정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40% 이하	100% 이하	4층 이하	

나. 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문화시설	○ 신설 - 면적 : 7,732㎡ - 주용도 : 문화시설 (고창군립미술관)	○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으로 군민과 방문객에게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하여 편익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

2.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고창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지형도면 승인 고시 도면 : “실음생략”

금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25-4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신규)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금강유역환경청장

1. 하천의 명칭 : 금강(국가하천)
2. 허가번호 : 제A300-25-0141-25210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무주군 환경과
 -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공작물 설치
 - 나. 개요 : 금강 데크로드 설치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용포리 1139 외 1필지
 - 나. 면적 : 30㎡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5. 11. 13. ~ 2030. 11. 1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5-1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익산소방서장

1. 공고기간: 2025. 11. 14. ~ 2025. 11. 29.(15일간)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가. 위반자현황

1) 위 반 자: 박*영

2) 주민등록번호: 720330-1*****

3)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40번길 25, 110동 1304호

4) 위반사항: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나. 과 태 료: 금539,000원(금오십삼만구천원) [가산금 금39,000원 포함]

다. 납부기한: 2025년 12월 1일

라. 납부방법

1) 고지서 납부(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2)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573963(익산소방서) 납부자명으로 입금

3)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가능

마. 미납 시 조치사항: 중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 진행

바. 문 의 처: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65)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소방서 공고 제2025-2호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를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게 과태료 독촉 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익산소방서장

1. 공고기간: 2025. 11. 14. ~ 2025. 11. 29.(15일간)

2. 공고내용: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공고

가. 위반자현황

1) 위 반 자: 이*학

2) 주민등록번호: 690903-1*****

3)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 116 20*동 30*호

4) 위반사항: 제조소등 용도폐지 신고의무 위반(지연신고 31일 이후)

나. 과 태 료: 금3,731,000원(금삼백칠십삼만천원) [가산금 금231,000원 포함]

다. 납부기한: 2025년 12월 8일

라. 납부방법

1) 고지서 납부(아래 문의처로 연락 시 고지서 발행)

2) 계좌입금 전북은행 1013-01-3573963(익산소방서) 납부자명으로 입금

3)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가능

마. 미납 시 조치사항: 중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재산 압류 등) 진행

바. 문 의 처: 익산소방서 대응예방과(전북 익산시 무왕로 1338, ☎ 063-839-3265)